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38
----------	-------

발의연월일 : 2026. 8. 11.

발 의 자 : 주호영 · 강명구 · 김용태
박성민 · 김장겸 · 정성국
박대출 · 권영진 · 성일종
유용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를 각각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분류하여 불완전판매 금지 등에 관하여 규제하고 있음.

한편, 최근 보험시장에 보험설계사 1천명 이상을 고용한 대형 보험대리점이 44개에 이르고 그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수도 총 18만명을 넘는 등 보험판매 시장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형 보험대리점들에 대한 규제 체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험업법」에 대형 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별도 분리 규정하면서 현행법상 ‘보험판매전문회사’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추가 규정하여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라목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37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라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보험업법」 제2조제9호의2에 따른 보험판매전문회사
제4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판매전문회사: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u>라. 「보험업법」 제2조제9호</u>
	<u>의2에 따른 보험판매전문</u>
	<u>회사</u>
<u>라.</u> ~ <u>아.</u> (생 략)	<u>마.</u> ~ <u>자.</u> (현행 라목부터
	아목까지와 같음)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제4조(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등이 해당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 판매업등(금융상품 판매업과 금융상품자문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다른 법률에	제4조(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 ----- ----- ----- ----- -----. ----- ----- ----- -----

따라 겸영하는 경우에는 겸영하는 업에 해당하는 금융상품 판매업자등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 10. (생략) <u><신설></u> 11. ~ 16. (생략)	----- ----- ----- -----. 1. ~ 10. (현행과 같음) <u>10의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판매전문회사: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u> 11. ~ 16. (현행과 같음)
--	--